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2,195,488	24,965,865
일반회계	766,399,550	22,991,987
특별회계	65,795,938	1,973,878
공기업특별회계	56,412,209	1,692,366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9,808,976	594,26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6,603,233	1,098,097
기타특별회계	9,383,729	281,51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62,156	49,865
의료보호특별회계	3,031,615	90,948
수질개선특별회계	514,142	15,42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02,745	21,082
주택사업특별회계	488,936	14,668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2,984,135	89,5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 해당없음 "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129,73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